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



개정사항 주요내용

- ④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 상황허가 대상 품목 확대 (798개 → 1,159개)
 - 통제기준 변경
(품명·기술사양 → 품명·기술사양 + HS코드 6단위)
- ④ 기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
 - 허가면제 추가, 포괄허가 관리 강화 등

對러 수출통제 경과

러-우 전쟁 발발 ⇒ 국제사회의 對러 제재 동참

전략물자



수출허가 불허

非전략물자

| 1차 : '22.3.26 |

| 2차 : '23.4.28 |



상황허가 대상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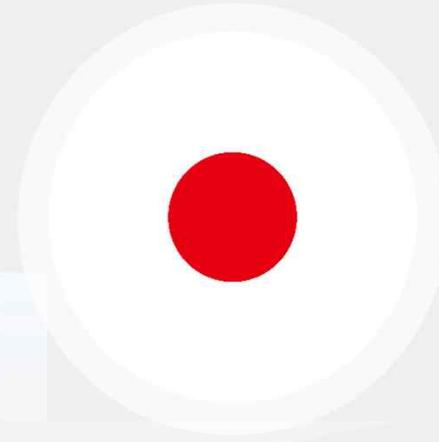
주요국 동향



- HS 10단위에서 6단위로 통제기준 변경('23.2.24)
- 산업용품목 1,224개 통제 추가('23.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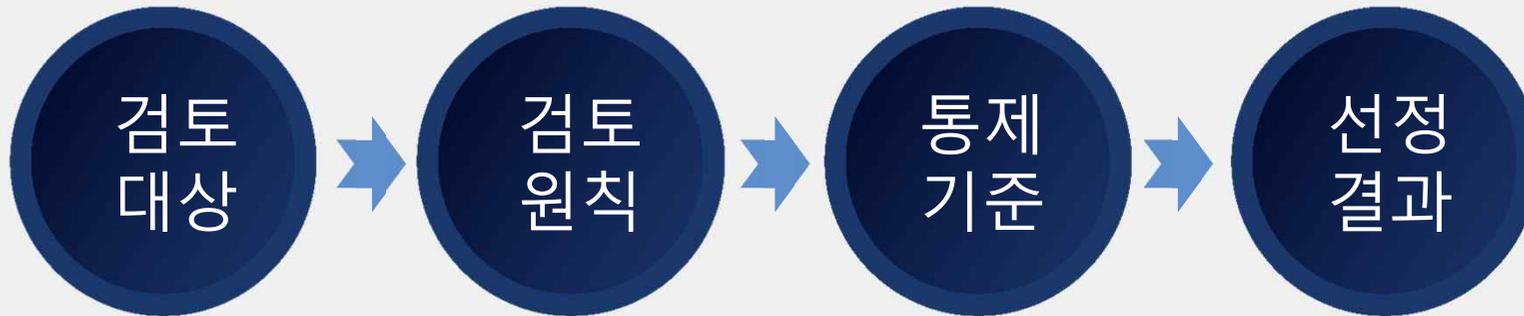


- 자동차 통제기준 강화 (5만 유로→1900cc초과) ('23.6.23)
- 철강제품, 이차전지 등 통제 추가('23.12.18)



- 산업용 품목 758개 통제 추가 및 자동차 통제 (EU기준과 일치) 강화 ('23.8.2)

수출통제 품목 선정 절차



- 美, EU, 日 등의 對러 수출통제 확대품목 2천여개 중 기존 통제품목, 상황허가 면제 대상을 제외한 **1,500여개**

- **생화학·첨단기술 등**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전부 반영**
- **일반산업품목** 무기 전용 가능성, EU·日 통제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별 반영**

- **일반산업품목은** 현행 HS 10단위 기준에서 美, EU, 日 등 주요국과 공조 및 통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통인 HS 6단위로 통일**

- **682개 품목 추가** → 전체 품목수는 **1,159개로 확대**
- **승용차는 미화 5만불 초과** → 배기량 **2000cc 초과로 변경**

주요 신규 통제품목

- 2,000cc 초과 승용차
- 대형 화물자동차



자동차



기계

- 건설중장비
- 운반하역기계
- 열교환기, 펌프



의료기기
/화학

- X선·방사선기기 및 부품
- 도료(페인트)



철강

- 아연도강판
- 철구조물



전기·전자

- 차량용배터리
- 전선, 배전반

변경사항

품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전력물자 관련	품목수	109개	109개 (기존과 동일)
	통제기준	품명+기술사양	품명+기술사양(기존과 동일)
 생화학·첨단기술	품목수	122개	134개 (12개 신설)
	통제기준	품명+기술사양	품명+기술사양(기존과 동일)
 일반산업품목	품목수	567개	916개 (246개 HS 6단위 통합 + 670개 신설)
	통제기준	품명+기술사양	HS 6단위 코드
합 계		798개	1,159개

사례	개정 전	개정 후
 수력엔진	수력엔진(무한 회전식, 기어 타입) 수력엔진(무한 회전식, 레이디얼 피스톤 타입) 수력엔진(무한 회전식, 액시알 피스톤 타입) 수력엔진(무한 회전식)	HS 841229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수출통제 품목 예시

< 품명 ·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통제번호 1~243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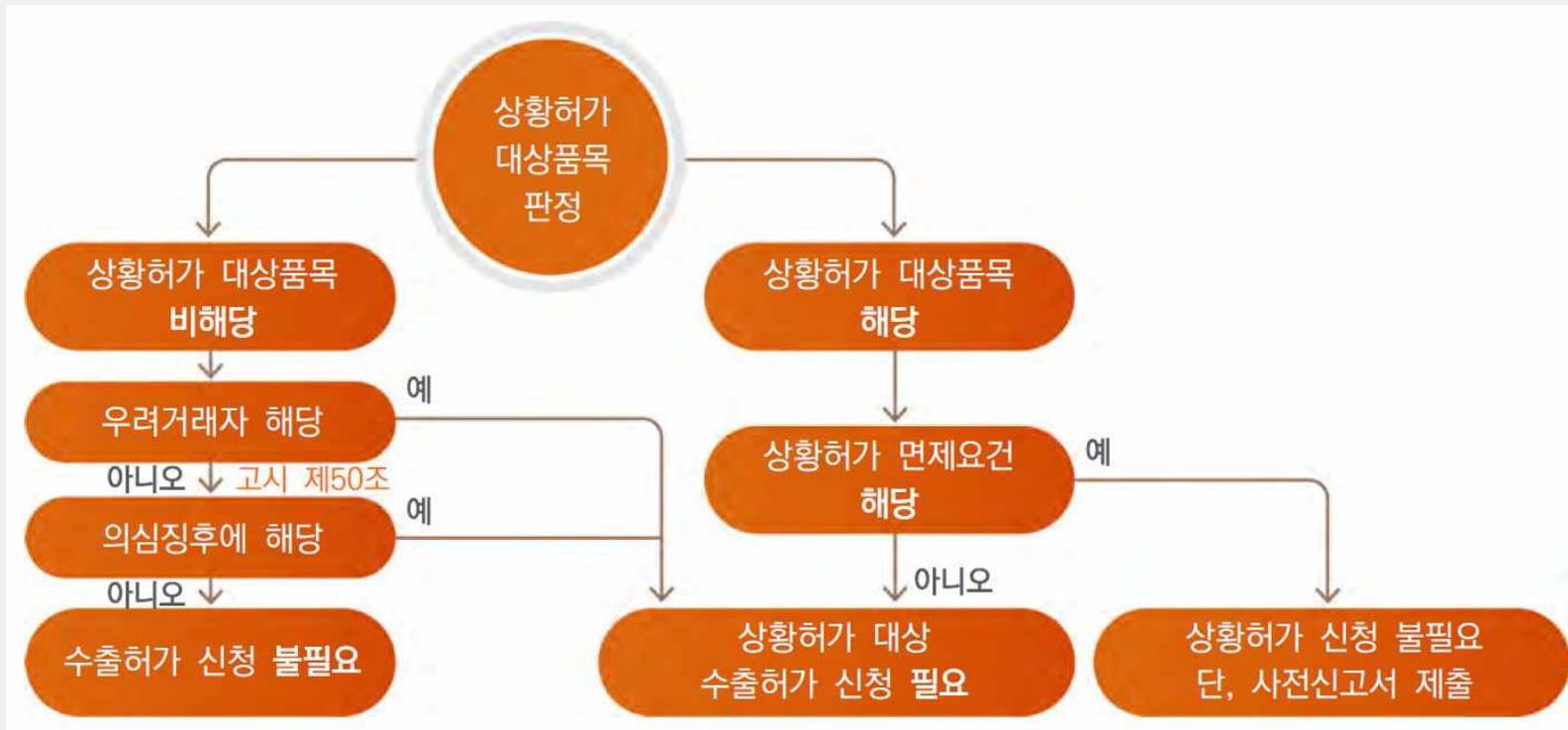
번호	대상품목	상세사양	Description	별표 2의 관련 품목	HS code	수출 지역
	전자 장치	별표 2 3A001 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전자 장치 및 "구성품"으로서 다음의 것	Electronic devices, and "components" not controlled by 3A001.	-	-	러시아, 벨라 루스
1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a.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회로",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 회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회로로 다음의 것: a.1. 5 GFLOPS 이상의 성능 속도와 32 비트 이상의 접근 폭을 갖는 산술 논리 장치; a.2. 25 MHz 를 초과하는 클록 주파수 속도; 또는 a.3. 하나 이상의 데이터 또는 명령 버스 또는 직렬 통신 포트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회로" 사이에 2.5 Mbyte/s 의 전송 속도로 직접 외부 연결을 제공하는 것	a. "Microprocessor microcircuits", "microcomputer microcircuits", and microcontroller microcircuits having any of the following: a.1. A performance speed of 5 GFLOPS or more and an arithmetic logic unit with an access width of 32 bit or more; a.2. A clock frequency rate exceeding 25 MHz; or a.3. More than one data or instruction bus or serial communication port that provides a direct external interconnection between parallel "microprocessor microcircuits" with a transfer rate of 2.5 Mbyte/s;	3A001.a.3	-	러시아, 벨라 루스

<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통제번호 244~1159번) >

번호	대상품목	상세사양	Description	별표 2의 관련 품목	HS code	수출 지역
						루스
244		내화점토(하소한 것과 상관없음)	Fire Clay, Whether or Not Calcined	-	2508.30	러시아, 벨라 루스
245		멀라이트	Mullite	-	2508.60	러시아, 벨라 루스
246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 어스	Chamotte or Dinas Earth	-	2508.70	러시아, 벨라 루스
247		석회석 용제, 석회나 시멘트 제조용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또는 토양 개량용)	Limestone Flux; Limestone and Other Calcareous Stone,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Lime or Cement (Or for Soil Improvement)	-	2521.00	러시아, 벨라 루스
248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은 제외]	Aluminum Oxide, Except Artificial Corundum, Nesoi	-	2818.20	러시아, 벨라 루스

상황허가 품목 판정 및 허가

-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 후 해당 될 경우 반드시 허가 후 수출 필요
- 
 상황허가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Yestrade 조회 가능)이거나 의심징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에 해당되는 경우 상황허가 신청 필요



상황허가 품목 판정

① 자가판정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를 참고하여 상황허가 품목을 스스로 확인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에 판정 결과를 등록

② 전문판정

- 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
- **필요서류:** 물품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표시 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 **소요기간:** 15일 (서류보완, 외부자문으로 인한 소요일수는 제외)

자가판정 절차

품목 정보 등록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영상 안내**

러시아, 벨라루스 관련 상황허가 자가판정의 경우에도 상기 동영상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표2-2의 산업중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자가판정입니다. **고시 발표2-2** 확인 후 판정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발표2-2 [\(5\)](#)) (HSK 연계표 [\(3\)](#))

품목정보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여부 *	<input type="radio"/> 해당(발표 2-2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radio"/> 비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시 발표2-2 표의 번호 기입
	HS번호 *	<input type="text" value="XXXXXX"/> * 관세청 제출자료와 동일한 HS 번호 기입 <input type="checkbox"/>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
	HS품명	<input type="text"/>
	품명 *	<input type="text"/> * 신정품종의 일반적인 품종명 혹은 제품명 기재 (예: 게이트발브)
	영사 및 규격	<input type="text"/> *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한 신정품종의 고유모델명 기재 (예: AB34X-35) * 단, 모델명 및 모델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한 신정품종명 혹은 품종명 기재
		<input type="text"/> * 신정품종의 특성 기재(주요재질, 구성물질, 사양 등) (예: body 재질-A105+PFA lining, 표칭지수-5*)
	용도 *	<input type="text"/> * 사용되는 산업군 혹은 장비군 등을 포함한 상세목적 및 용도 기재(예: 반도체 장비의 약액공급 및 차단용도)
	판정 상세근거 *	<input type="text"/> *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상세 근거 기재 (예: 판정 대상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발표2-2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통제하는 품목이 아님, 판정대상의 공작기계의 정밀도 사양이 상황허가 통제기준을 만족함)
	사용처	<input type="text" value="일반수출입물자"/>
	무기 구분	<input type="text" value="대량과과무기(WMD)"/>

1 자가판정 등록메뉴에서 HS번호 조회

HS 조회

● HS번호 또는 HS품명을 입력하신 뒤 검색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HS 번호 * 숫자만 입력하세요.

· HS 품명

HS 번호	HS 품명	선택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가판정 절차

2 HS 6단위 기준 통제품목 (916개)에 해당될 경우
→ “해당”으로 자동 등록 (“비해당” 입력 안됨)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등록

1단계 기본정보 → 2단계 품목/기술정보 → 3단계 신청서정보

품목 정보 등록

해당(별표 2-2 번호) 329

비해당

해당시 별표2-2 표의 번호 기입

844830000

HS번호

관세

CD, 관세

수출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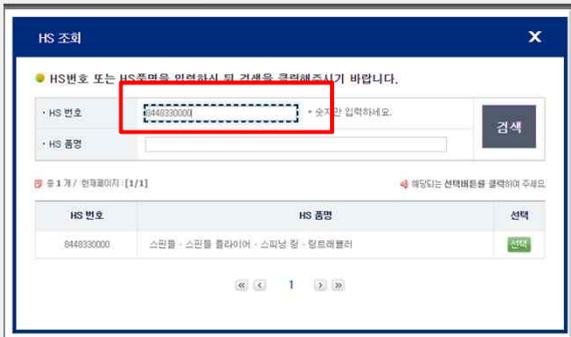
입력한 HSK 번호는 별표2-2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4번 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선택한 HSK가 맞으시면 자가판정 결과 “해당” 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통제번호	상세사항	관련 HSK
1154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운광 투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90

확인

자가판정 절차

3 HS 6단위 품목 외 통제품목(전략물자 관련, 생화학 등)에 해당될 경우
 → 상세 사양 확인 후
 “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등록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등록

1단계 기본정보 → 2단계 품목/기술정보 → 3단계 신청서정보

품목 정보 등록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영상 안내

러시아, 벨라루스 관련 상황허가 자가판정의 경우에도 상기 등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2-2의 산업용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자가판정입니다. **그시 별표2-2** 항목에 판정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2) (HSK 연계표)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여부

해당(별표 2-2 번호) 329

비해당

해당시 별표2-2 표의 번호 기입

HS번호 *

출자표와 동일한 HS번호로 입력

검정표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

입력한 HSK 번호는 별표2-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될 경우 자가판정 결과 “해당”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통제번호	상세사양	관련 HSK
148	트리부틸아민(CAS 102-82-9)	2921.19-2000

확인

자가판정 절차

- 4 통제품목 연계 HSK가 아닌 경우
→ “비해당”으로 등록 가능
(단,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문판정 권고)



품목 정보 등록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영상 안내

러시아, 벨라루스 관련 상황허가 자가판정의 경우에도 상기 통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2-2의 산업용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자가판정입니다. 고시 별표2-2 확인 후 판정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2) (HSK 연계표)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여부

해당(별표 2-2 번호)

비해당

HS번호 * 84799090

HS명명 프레스 - 압출기의 것

제품명

판정

사용처 일반수출입물자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상세 근거 기재
(예: 판정 대상 품목은 전락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2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통제하는 품목이 아닌, 판정대상인 공작기계의 정밀도 사양이 상황허가 통제기준을 만족함)

입력한 HSK 번호는 자가판정 시
“비해당”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HSK 번호 또는
별표2-2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판정을 권고 드립니다.

상황허가 심사대상

- ④ 상황허가 품목의 對러/벨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 ④ 아래 사안별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1. 선박 및 항공기 안전
2. 민간 원자력 안전
3. 인도적 지원(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4.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 (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5.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추가 (시행일 기준)되기 전날까지 거래계약이 체결된 물품 등인 경우

*통제번호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통제번호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통제번호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상황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기간

🌐 심사기준

-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 처리기간 : 15일

- 단, 별도의 기술심사, 서류 보완,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기간은 불산입

🌐 유효기간 : 1년

상황허가 면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가 면제 단, 수출전 사전신고서를 제출 필요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2.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공용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3. 수입한 물품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4.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5.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7.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한 지원에 한정
8.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 소비자용 태블릿 및 노트북,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마우스, 개인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 셋톱박스, 녹음 장치 등

수출신고시 유의사항

④ 對러 상황허가 품목은 수출신고시 **세관에서 선별**되어
관련 **서류 제출 후 수리 예정**

▶ ① HS 6단위 기준 통제품목 : '상황허가서' 또는
'사전신고서'* 제출 ("비해당" 판정서는 불인정)

* 상황허가 면제 품목인 경우 허가없이 '사전신고서' 제출로 같음

▶ ② 품명(사양) 기준 통제품목 : '상황허가서' 또는
"비해당" 자가·전문판정서 제출

(다만, 고시 개정 이후에는 기존 판정서는 불인정(신규 발급 필요))

무허가 수출 처벌



1) 행정처분

- 3년 이하의 전략물자 등 수출입 제한
- 교육명령



2) 사법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 물품가액 5배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은 병과
- 러시아가 최종목적지임을 알고 제3국으로 우회수출시 처벌 대상

무허가 수출 처벌사례

④ (무허가 수출) 상황허가 대상인 메모리칩을 임의로 자가판정 "비해당"으로 판정하여 허가없이 러시아로 수출

▶ 무허가 수출로 행정처분(수출제한, 교육명령)



④ (우회수출) 반도체장비가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자 중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

▶ 세관 압수수색 후 우회수출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 송치(징역, 벌금 부과)



기타 주의사항

🌐 미국 제재대상자와 거래시 동반 제재(secondary sanction) 위험

- 상무부 Entity List, Military End-user List 등
*<https://www.trade.gov/consolidated-screening-list>
- 재무부 SDN List, Non-SDN List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 美, EU, 英, 日 공동지정 우회수출 핵심관리품목 (Common High Priority Items) 수출 주의

- 러시아 外 국가로 수출시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확인 철저
*https://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9/list-common-high-priority-items_en.pdf

美 제재 사례

東亞日報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A08면 종합

美, 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첫 제재

부산 거주하며 리 기업 대리인 활동
美재무부 대러 제재 위반 명단 포함
서울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檢송치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는 우리 관제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를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는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

며 식량과 재너원인 연쇄버퍼 등 시사저널을 호 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 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이고 마리야호, 야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아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야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신규진 기자

FAQ

Q1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1 고시 시행일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관보 게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고시 시행일은 관보 게재 시 발표될 예정이며, 전자관보시스템 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3차 고시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되는 통제품목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수출되거나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FAQ

Q2 HS 코드만으로 對러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요?

A2 對러 상황허가 품목은 ①HS코드만으로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916개 품목과 ②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①HS 코드로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916개 품목은 관련 HS 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②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SK연계표 제공 예정)

FAQ

Q3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발급받는 자가판정서와 전문판정서는 유효한가요?

A3

고시 개정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기준 및 통제번호 등이 변경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 :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고시일에 해당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시 개정 이후 다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신청하고 수출통관 시에도 새로운 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AQ

Q4

하나의 품목이 복수의 통제규정에 따라 통제될 경우 판정서는 어떻게 발급되는지요?

A4

해당 품목의 전문판정시 통제번호는 복수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황허가 사안별 심사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앞선(숫자가 작은) 통제번호가 적용됩니다.

가령, 선박용 엔진은 통제번호 44.g, 610번에 의해 통제되므로 앞선 통제번호인 44.g번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22년 2월 27일까지 거래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허가당국은 복수의 통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허가 심사시 정확한 통제번호 확인을 위해 전문판정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FAQ

Q5

상황허가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체결 계약의 인정 범위는?

A5

계약의 체결시점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발효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물품명, 가액,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재 등 물품의 특성상 최종사용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수하인과의 계약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허가당국에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6

해외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통관없이 현지에서 바로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6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 및 러시아 수입자와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국내에서 지급/수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령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어 허가 대상입니다.

기타 제도 개선사항

① 포괄허가 사후관리 강화

- ④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 단,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

②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 확대

- ④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을 위해 KOICA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 신설**
- ④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시 허가 면제 적용**
- ④ **원자력전용기술 허가 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개국)에서 협정체결국(29개국*)으로 확대**
- * 우리와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UAE, 사우디 등 9개국 추가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문의

- (제도문의) 02-6000-6498, 6499
- (품목문의) 02-6000-6496, 6497



전략물자관리원 안내 페이지 (Trade Alert, 국제제재)

<https://www.kosti.or.kr/web/contents/trdalrt.do>

<https://sanction.kosti.or.kr/home/nationHomeIndex.do>



방문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6층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전략물자관리원





감사합니다

THANK YOU